

1. 폐수처리업 정기검사 개요

가. 검사 목적

- 민간부문에서 처리하는 산업폐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 및 폐수처리·관리, 시설운영, 유지관리 등 처리 시설의 안정성에 관한 정기검사

나. 검사 범위

- 폐수처리업체(민간부문)에 대한 폐수처리·관리,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등 처리시설의 안정성에 관한 정기검사(1회/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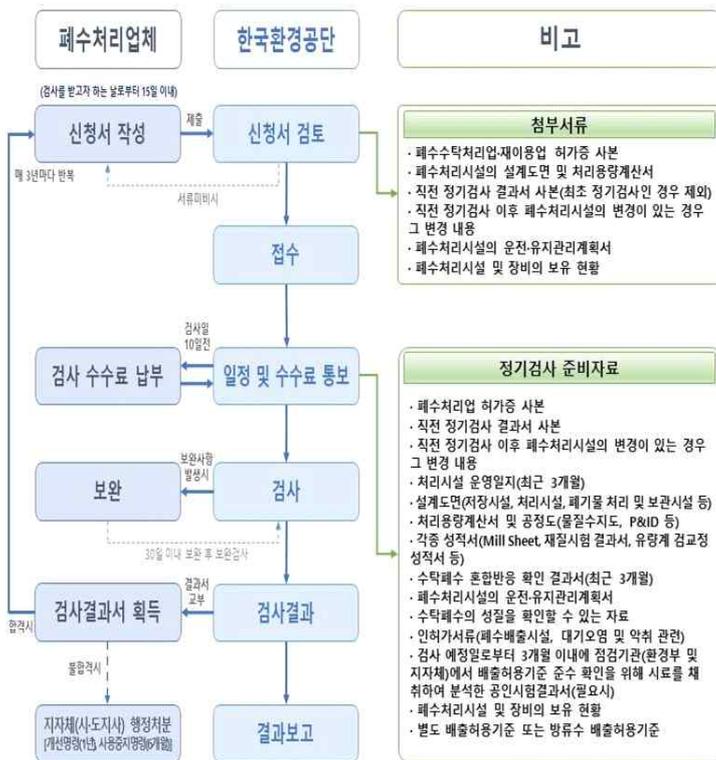
다. 관련 법규 및 수행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263호, '2021.12.7.)
-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264호, '2021.12.7.)

라. 검사 내용

대상시설	검사종류	주기 또는 시점
운영 중인 수탁 폐수처리업체	정기검사	최초 검사 이후 매 3년
운영 중인 폐수 재이용업 업체	정기검사	최초 검사 이후 매 3년
신규 폐수처리업체	정기검사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그 이후 매 3년

2. 검사신청 절차 및 안내



3. 폐수처리업 정기검사 세부기준 및 검사방법

가. 저장시설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저장시설 용량	1) 1일 최대처리량의 3일분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가) 허가증에 명기된 1일 처리능력의 3일분 이상의 규모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측 등의 방법으로 판정한다. 나) 1일 처리능력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일 8시간 이상 가동 시에는 1일 최대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저장시설 용량의 판정은 전체 저장시설 용량의 90%를 기준으로 한다.
저장시설의 재질	1) 저장시설은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2) 저장시설은 저장폐수가 누출 또는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가)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수탁폐수의 성질과 저장시설의 재질을 확인한다. 나) 저장시설 확인을 통해 폐수와 맞닿는 저장시설의 내면이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거나 부식 방지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 저장시설의 외면은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등을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가) 저장시설의 부식, 균열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저장시설의 구조	1) 폐수를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표시되어야 한다. 2) 저장시설은 유입 및 보관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작업시 안전한 구조여야 한다.	가) 폐수처리방법별(재이용업의 경우에는 성상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나) 혼합폐수의 폭발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별도의 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가) 적산유량계 설치 가능 여부 및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가) 저장시설의 덮개, 가스배출구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나) 폐수를 이송하기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다) 진동, 충격으로 저장시설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지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 저장시설이 실내에 설치된 경우 유해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마) 저장시설 주위는 안전한 작업을 위해 적절한 조도(75럭스 이상)를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나. 처리시설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폐수처리능력	1) 수탁받은 폐수(또는 재이용 폐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한다.	가) 제출된 서류 확인을 통해 처리시설의 종류를 확인하고 현장 하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한다. (1)증발농축시설, (2)건조시설, (3)소각시설, (4) 허가기관이 (1)~(3)까지의 시설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처리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2) 폐수처리시설의 총 처리 능력은 7.5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단, 재이용업의 경우는 재이용 후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의 처리능력이 재이용 시설을 최대 가동 시 배출되는 폐수용량 이어야 한다.)	가) 총 처리능력은 허가받은 시설의 처리능력의 합으로 산정한다. 다만, 총 처리능력 산정 시 주처리시설의 후처리 과정의 시설은 제외한다. 나) 처리시설별 처리능력은 저장 시설에 저장된 폐수를 활용하여 해당 처리시설이 실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이 경우 처리시설별 처리능력 검사방법은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기관에서 정한다.
폐수처리 시설	1) 증발농축시설 가) 시설의 유입수와 응축수(응축수 발생시설에 한함)의 적산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의 유입수와 응축수의 적산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처리대상 폐수 유입 등을 통해 적산유량 측정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 증발농축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1) 밀폐구조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및 잔류물의 외부유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다.
	다) 응축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발생시설에 한함).	(1) 응축수 처리시설의 설치 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라) 주요 설비가 적정하게 작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열교환기 등 처리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건조시설 가) 건조 잔류물의 수분함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조 잔류물의 수분함량 기준(75퍼센트 이하)을 준수하는지를 측정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나) 건조 잔류물은 외부로 누출·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1) 밀폐구조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및 잔류물의 외부유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다.
	3) 소각시설	..생략..
	4) 물리화학적처리시설 가) 처리능력은 4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재이용업의 경우는 제외)	(1) 시설 유량계를 통해 유입·유출 유량을 확인하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되는 양을 확인하여 시설의 처리능력을 확인한다.
	나) 처리대상 폐수를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분석한다.
	다) 폐수처리 약품의 양이 일정하게 주입될 수 있어야 한다.	(1) 폐수처리 약품을 일정하게 주입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라) 주요 설비가 적정하게 작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교반기 등 주요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5) 생물화학적처리시설 가) 처리능력은 4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재이용업의 경우는 제외)	(1) 시설 유량계를 통해 유입·유출 유량을 확인하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되는 양을 확인하여 시설의 처리능력을 확인한다.
	나) 처리대상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분석한다.
	다) 폐수처리 약품의 양이 일정하게 주입될 수 있어야 한다.	(1) 폐수처리 약품을 일정하게 주입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라) 생물반응조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생물반응조의 주요 운영인자(PH, 수온, DO, MLSS 등)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6) 기타 가)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과 측정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악취물질,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측정구 설치 여부를 확인(해당시설에 한함)한다.	
	나) 처리시설의 잔류물·슬러지 등 폐기물 보관장은 주변 토양오염 및 빗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보관시설의 적정구조(주변 토양오염 및 빗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여부 확인 및 현장 검사를 통해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다)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를 설치·부착하고, 폐수처리에 불필요한 배관이 없어야 한다.	(1)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의 설치·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2) 폐수배출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등을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과 다른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최종 방류구는 외부에서 방류상태가 관찰 가능해야 하며,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쉬운 구조여야 한다.	(1) 현장에서 방류상태 관찰가능 여부와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용이성 등 최종 방류구의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비고 1. 검사기관은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세부기준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유사시설의 검사기준, 방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2. 검사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점검기관(환경부 및 관할 자치단체)에서 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정기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을 생략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3. 제2호나목3)의 소각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하여 해당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 합격하고 검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